제 2395호
2015. 09. 16.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 집 인 :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제2015-63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2015-639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제2015-640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제2015-642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제2015-647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16
제2015-648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제2015-649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제2015-65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 26
제2015-654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7
제2015-655호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2395호 55-2 2015.09.16.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3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등록규제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기부채납을 명시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도로명주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 ·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 제15조 제3항은 '수탁자가 수탁기간 중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개시 전에 중구에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 라고하여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수탁자의 기부채납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안 제15조제3항)

- 중구 청소년수련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22, FAX: 3396-8743, 메일 : 20090304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2395호 55-4 2015.09.16.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운영하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위치란 중 “중구 산당3동 844-5”를 “중구 동호로5길 19(산당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② 생략 ③ 수탁자가 수탁기간 중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개시 전에 중구에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운영하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별표1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	**별표1**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	중구 신당3동 844-5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	중구 동호로5길 19(신당동)

2395호 55-6 2015.09.16.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3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처우개선비를 명문화 하여 시비 지원 종사자와 구비 지원종사자 간 인건비 차이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설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22, FAX: 3396-8743, 메일 : 20090304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2395호 55-7 2015.09.16.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의 “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센터종사자 인건비 3. ~ 4. 생략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4.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4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 ·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안 제3조)

나.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22, FAX: 3396-8743, 메일 : 20090304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2395호 55-9 2015.09.16.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로 같은 조 제2호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별표 중 뒷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42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주차거부금지) 제8호 삭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삭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차량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 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 3396-6262, FAX: 3396-8873, 메일: espg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395호 55-12 2015.09.16.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제한 경우”를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중 “주차료”를 “주차표”로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0조제2항 관련)

고지번호	건축물 현황				비용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납부일	무상사용기간	지정주차장
	위치	건축연면적	의무면제대수	허가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생략)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제한 경우 3. ~ 7. (생략)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제3조(주차거부금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제3조의 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제3조의 2 <삭 제>**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료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 ---------- ----------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제21조(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법 제19조2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별지 제8호 서식

<table>
<tr><td colspan="3">비용납부 의무자</td></tr>
<tr><td>주소</td><td>성명</td><td>주민등록번호</td></tr>
</table>

</td><td>

제21조(융자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9조제2항**에----------

별지 제8호 서식

<table>
<tr><td colspan="3">비용납부 의무자</td></tr>
<tr><td>주소</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
</table>

</td></tr>
</table>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47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3.12.31.)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되고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375, FAX:3396-8734, 메일:inav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지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폐지안 1부. 끝.

2395호 55-17 2015.09.16.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48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리업체 지정시 지역을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애고 지역과 상관없이 수요자가 원하는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조항 삭제 (제3조제1항)

- 수리업체 지정 기준 중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를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서식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374, FAX:3396-8734, 메일:stoptj@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395호 55-19 2015.09.16.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연번: 동명 연-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 애 명			장 애 등 급	급	
수 급 유 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신 · 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연번: 동명 08-01~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 애 명		장 애 등 급	급		
수 급 유 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 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연번: 동명 연-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 애 명		장 애 등 급	급		
수 급 유 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49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5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함 (안 제8조)

○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함 (안 제8조)

○ 기존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3.3.8.~2016.3.7. 로 만료가 되는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5372, FAX : 02-3396-8734, E-mail : freshkks@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 중 “3년”을 “5년”으로,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 · 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탁운영) ⑤ 위탁 운영기간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⑤ ---------- 5년 ---------- 한 차례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5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 예우를 반영하여 우선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된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항 및 법명의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1호서식 개정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제38조를 제42조로함. (안 제1조)

○『모·부자복지법』제15조를『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로 함.(안 제1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를『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의2로 함.(안 제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별지1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개정. (안 제4조 별지1호서식)

○ 제1조(목적)에서 우선권 대상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 개정 (안 제5조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5372, FAX : 02-3396-8734, E-mail : freshkks@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중구”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문 판매대 등”을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 판매대 등”이라 한다)”로 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며,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게시판,구정소식지,구보게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를 “게시판, 구정 소식지, 구보 등의 방법으로” 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산청”을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으로 하고, “장애인 등”을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를 “방법은 해당”으로 하고,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지 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용의 청사내 신문판매대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지 1호 서식]

□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위탁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등급 (장애인인경우)	
	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	□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님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 ·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신 · 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 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모 · 부자복지법 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중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 ·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규정한 자)및 65세 이상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모 ·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순국선열유족(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생 략)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현행과 같음) ② ---------- **신문 ·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신문 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게시판,구정소식지,구보게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공고) ----------**제2조에 따른** ---------- **게시판, 구정 소식지, 구보 등의 방법으로** ----------.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산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우선계약) ----------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 ---------- --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로서 계약자가직접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다.**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해당**----------**규정에 따른다.**
제8조(계약의 해지) ---- **각 호의** 1 ----------.	제8조(계약의 해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 **1회에 한하여** ----------.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 **한 차례만** ----------.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신문·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위탁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모자가정의여성 ▫65세이상 노인 ▫순국선열가족			장애등급 (장애인인경우)	
	생활보호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	▫거택보호 ▫자활보호 ▫생활보호대상이 아님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

개 정 안

[별지 1호 서식]

□신문·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위탁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등급 (장애인인경우)	
	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	□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님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

현 행

［별표］

판매대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때의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 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
1	장애인등급 1~2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2	장애인등급 3~4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3	장애인등급 5~6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개 정 안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 사무용품 ·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 사무용품 ·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 ·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5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및 하위법령 전부개정(2014.07.15.)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2014.05.14 및 2014.10.20)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물만 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내용과 동일한 점용허가 대상을 삭제하며,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전통시장내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함

(안 제2조)

나.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일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적용시점 차이에 따른 시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함(안 제3조)

다. 10면 이상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2), 그 외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16)로 구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와 같이 0.02로 통일하여 보도파손에 큰 영향을 주는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안 제3조 별표)

라. 도로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된 서울시 조례를 반영,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의 점용요율을 기존 0.01에서 0.007로, 노점은 기존 0.02에서 0.007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기존 0.02에서 0.01로 수정함(안 제3조 별표)

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규정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동일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법령에서 점용료 감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한 경우에 점용료감면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위법한 조례 규정을 바로 잡고자 함.(안 제7조)

사. 「도로법 시행령」 제41조의 점용료 반환 관련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등 반환시 가산금 산정 이자 적용규정 근거 규정을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로 잡고자 함(안 제9조)

아. 수수료 감면 시 제7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제68조를 준용토록 변경함(안 제11조)

자.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14.07.15.) 에 따른 조문정리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따라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가로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6009, FAX:3396-8828, 메일:wonseok22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395호 55-39 2015.09.16.

서울특별시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제24조제5항제9호”를 “제55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제3호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시장 내 시설 등

5. 신·재생에너지 설비(단,「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영 제28조”를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로 하며, “법 제94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별표3"을 "영 별표4"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8조”를 “법 제61조”로 하고, “부령 제42조제1항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삭 제〉**
2. ~ 3.(생 략)	2. ~ 3.(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통시장 내 시설 등**
<신 설>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 ---------- ---------- ---------- ---------- ---------- -- **법 제72조**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 ---------- ---------- ---------- ----------**영 별표4** ----------.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42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 -,**법 제68조제3호**--------- ----------.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현 행	개 정 안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제4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

현 행

〔별표〕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6. 〈생략〉				
7.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10. 〈생략〉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을 곱한 금액

※비고

1.부터 8.까지 (생략)

1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 정 안

〔별표〕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6. 〈삭제〉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8~9. 〈삭제〉, 10〈현행유지〉				
3.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부터 8.까지 삭제

1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5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5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상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기준으로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게 기재되었거나, 중복 기재하여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 및 서식을 정비(삭제)함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62, FAX:3396-8750, 메일:jsh936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395호 55-47 2015.09.16.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및 제5항 중 **“제③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채촉”**을 **“해촉”**으로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50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략) 1. 주민생활지원국장 2. ~ 4. (생략) ④ 제③항 제1호에 따라 ---------- ---------- 제③항 제3호 및 ---------- ---------- ---------- 그 직을 상실한 날에 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3(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1. 복지환경국장 2. ~ 4.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제1호에 따라 ---------- ---------- 제3항 제3호 및 ---------- ---------- ----------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50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 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 ·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13조 (생략)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구청장 (인)**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 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____년____월____일까지 ____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 고지금액 / ② 취소(변경)액 / ③차 액 /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구청장 (인)**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관할법원) 발 신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 와 관련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삭 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 금액	
	⑥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번호 / ② 통지서 번호 / 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 / ④ 독촉장 발부일 / 납부기한: ⑤ 당초, ⑥ 독촉 / ⑦금액(천 원) / 납부의무자: ⑧ 성명, ⑨주소 / ⑩ 과태료납부일 / 이의제기: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빈 칸)	〈삭 제〉